

국가장학금운영 규정

- 제정 : 2013. 2. 7.
- 개정 : 2013. 10. 29.
- 개정 : 2014. 1. 21.
- 개정 : 2015. 3. 20.
- 개정 : 2015. 5. 13.
- 개정 : 2015. 10. 19.
- 개정 : 2017. 2. 28.
- 개정 : 2018. 3. 1.
- 개정 : 2019. 8. 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 국가장학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가 장학생 선발기준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과 국가장학금 사업 시행계획에 의한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른다.

제3조(장학금운영위원회) 국가장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교에 국가장학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제4조(조직) ① 본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 유고시에는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국가장학금 사업 시행계획에 의한 대학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2. 삭제
3. 국가장학생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등록금 인하 관련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5. 기타 국가장학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장학사정관) ① 장학사정관은 개별 학생의 상담 등을 통하여 맞춤형 장학금 정보를 제공하며 긴급한 경제사정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소득분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증빙자료 확인과 함께 면학의지 등을 심사 후 지원한다.(단, C학점 경고자인 경우 일괄 추천할 수 있다.)

② 장학사정관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장학사정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장학금의 종류 및 수혜 자격) 국가장학금의 종류 및 수혜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장학금 종류 및 수혜자격은 한국장학재단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의한다.

1. 국가1유형 장학금
2. 국가2유형 장학금
3. 국가다자녀 장학금
4. 기타 국가에서 운영하는 장학금

제11조(장학생 선발) 장학생 선발은 소득 및 성적 등 심사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국가장학 대상으로 승인된 자에 한하여 선발한다.(단, 국가2유형의 경우 자체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선발 한다.)

제12조(장학금 지급) 장학금 지급은 정규 학기에 한하여 등록금(입학금)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국가1유형 및 국가다자녀장학금 : 소득분위별로 학기별 일정액 지급(국가장학금 지원 기준)
2. 국가2유형 장학금 : 대학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예산(인센티브 포함)에 따라 자체 설계기준에 의해 지급 한다.
3. 기타 해당 장학금 업무처리기준에 의한다.

제13조(장학금 지급 방법) ① 장학금은 유형별로 표기하여 학기별 등록금에 우선 감면하고 우선 감면을 적용하지 못하는 대상자는 최종 등록 후에 학생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② 학자금대출자 중 해당 학기 대출금과 장학금의 총 수혜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금을 상환한다.

제14조(이중지원 방지) ① 국가장학금 수혜대상 자는 등록금(입학금 포함)을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국가장학금 사업 시행계획 대학 업무처리기준 국가장학금 이중지원의 범위)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장학금 등의 대가성 장학금 및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등의 추가 지원이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제15조(장학금 반환) 학적변동(휴학, 자퇴, 제적 등) 자와 장학금 중복수혜로 인한 등록금 초과 등 장학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의하여 반환한다.

단, 학적변동자중 휴학자인 경우 등록금(장학금 포함)을 이연할 수 있다.

제16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5조 개정 내용 중 휴학자에 대한 장학금 반환은 2020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